

#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영등포역 일대는 대표적인 노숙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의뢰 권한을 가진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숙인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음
- 나. 영등포역 인근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,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
- 다. '19.12.31. 민간위탁 기한이 만료되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“시립 영등포보현의집”의 기능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, 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개요

- 사업명 :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운영 (신규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
- 설립일 : 2020. 1. 1.
- 규모 : 대지 2,342㎡, 건물 2,784.8㎡(지하2층, 지상3층)
- 위탁법인 : 공개모집
- 운영인력 : 37명 (센터장 1명 외 36명) 내외

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4.12.31.(5년)
  - 위탁사무
    -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(일시보호시설 포함)
    -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, 세탁, 이·미용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
    - 영등포 무료진료소 운영 및 의료지원
    -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, 주거 및 일자리 연계
    - 위탁시설의 재산관리,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
  - 위탁운영 예산 : 2,425백만원
    -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: 2,100백만원
    - 무료진료소 : 325백만원
- ※ '19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예산 : 2,266백만원

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노숙인 종합지원센터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(수탁기관 선정)

## 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들에게 임시적인 잠자리 및 기초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, 거리상담 활동, 응급구호, 무료진료소 운영,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진행함.
-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·자립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## 마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

- '19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안건 상정('19.7.15.)
- 심의결과 : 적정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노숙인 종합지원센터)

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1조,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·의료·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
2.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
3. 복지서비스 이력관리
4. 심리상담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(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)

① 법 제19조제5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, 협의 및 결정
2.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
3.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고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활지원과 자활지원팀 이진산(☎ 2133-7484)